

폭력피해와 성차

: 폭행·상해, 협박과 괴롭힘을 중심으로

김성언*

국 | 문 | 요 | 약

이 연구는 폭력피해에 대한 남녀의 차이를 다루려는 것이다. 기존 논의와 공식적인 통계자료들은 폭행과 구타 피해자는 대개 남성이라는 관념을 유지하는 데 기여해왔다. 하지만 이 연구에서는 여성 또한 구타나 폭행피해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며 피해의 수준이나 정도, 그 결과 역시 남성에 못지않다는 점을 경험적으로 규명하고 있다. 또한 남성들은 중하고 심각한 폭력의 희생자가 되고, 상대적으로 여성들은 경미한 폭력의 희생자가 된다는 관념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성찰이 이루어졌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여성주의적 관점에 입각하여 여성이 경험하는 폭력피해에서 있어 일반폭력과 성폭력의 '중층결합'의 문제, 폭력적인 가해자와의 대면 상황에서 여성피해자들에게서 나타나는 '저항에 있어서의 수단 선택성'과 가부장제 문화의 연관성에 대한 탐색적인 논증이 시도되었다.

- ❖ 주제어 : 여성에 대한 폭력, 성차별화된 폭력피해, 피해자-가해자 관계, 일반 폭력과 성폭력의 중층결합

I. 문제제기

상당수의 연구들은 여성보다 남성이 범죄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더 높으며, 이러한 특성은 폭력피해의 경우에도 예외가 아니라고 주장한다(Cohen and Felson, 1979; Goffredson, 1986; Miethe, Stafford, and Long, 1987). 하지만 몇몇 연구들은 여성이 남성보다 대인범죄의 희생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한다(LaGrange and Ferraro, 1989). 또한 여성이 피해자가 되는 범죄는 가장 적게 보고되는 유형이기 때문에 피해의 실제 범위와 정도에 대해서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 경남대학교 경찰·행정학부 교수

(Young, 1992). 더욱이 강간과 성폭력 등 특정 유형의 폭력피해는 ‘남성은 가해자, 여성은 피해자’로 성별화 되어 있다고도 말해진다(Madriz, 1997). 2003년도 미국의 전국 범죄피해조사(NCVS, National Crime Victimization Survey) 결과에 따르면, 남성은 주로 강도, 심한 폭행, 경미한 폭행의 피해자가 되는 반면, 여성은 주로 성폭행과 강간피해를 입는 것으로 보고되었다(Catalano, 2004). 이 조사결과만을 놓고 봤을 때, 남성과 여성이 경험하는 폭력피해의 유형은 각기 상이한 것처럼 여겨진다.

그런데 성적인 학대와 성폭력이 신체적 폭력, 협박, 스토킹 등과 항상 분리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아내에 대한 폭력이 일어나는 가정에서는 종종 자녀에 대한 신체적 폭력과 성적 학대가 동시에 발생한다(Edleson, 1999). 애인이나 결혼을 전제로 사귀는 사람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신체폭력과 성폭력은 동시발생적인 경우가 많다. 아내와 여자 친구에게 물리적인 폭력을 행사하는 남자는 이들을 성적으로도 학대한다(Bergen, 2004; Meyer, Vivian, and O'Leary, 1998; Tjaden and Thoennes, 2000). 요컨대 여성에 대한 성폭력과 일반폭력이 쉽게 구분되거나 분리해서 사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여성의 폭력피해율이 남성보다 낮은 것은 폭력피해에 대한 남녀의 신고율 차이 혹은 신고에 대한 태도 차이에서 비롯된다는 견해도 있다(Belknap, 2007: 275). 폭력피해를 감추고자 하는 여성들의 태도는 비단 그 보고 대상이 경찰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때문에 범죄피해조사에서조차 여성의 폭력피해율은 남성의 그것보다 낮게 나타나는 경향이 발견된다는 것이다. 여성은 자신의 신체적·성적 피해를 다른 사람에게 거의 얘기하지 않는다. 이야기하기엔 너무 개인적인 일인데다 당황하거나 부끄러워서, 가해자의 보복이 두려워서, 또는 모멸감과 자기비난 등으로 인해 여성들은 자신의 범죄피해를 경찰이나 연구자에게 신고하거나 보고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많은 조사 연구들은 일관되게 여성이 남성보다 범죄에 대해 더 많은 두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보고한다(Braungart, Braungart, and Hoyer, 1980; LaGrange and Ferraro, 1989; Ortega and Myles, 1987). 그러나 일부 범죄학자들은 대부분의 범죄 통계에서 여성의 피해율이 낮다는 이유를 들어 여성의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 수준이 높은 점을 비합리적 혹은 모순적인 현상으로 평가한다(Warr, 1984; Belknap, 2007: 275에서 재인용). 이에 대해 영(Young, 1992)은 여성은 범죄피해에 대한 두

려움은 크지만 신고율이 낮기 때문에 두려움 수준과 피해율 수준이 서로 모순되는 것처럼 보일 뿐이라고 반박하고, 연구자들은 여성의 범죄에 대한 두려움 수준을 여성의 범죄에 대한 실제적인 위협성을 평가하는 척도로 받아들일 것을 제안한다. 따라서 성폭력이나 구타가 남성이 경험하는 다른 범죄피해만큼 일관되게 경찰(또는 범죄피해조사)에 보고된다면 공식통계는 여성의 폭력피해 가능성이 남성보다 더 높게 기술될 것이라는 전망도 가능하다.

여성의 폭력피해에 대한 국내의 선행연구들은 대개 여성만이 피해자가 되는 범죄의 특성을 규명하는 데 초점을 맞춰왔다. 그리하여 강간과 성폭력 등을 통해 ‘폭력피해의 성별화’와 같은 주요 쟁점들이 폭넓게 다루어지고 그에 기초한 해법들이 제시되어 왔다. 그렇지만 여성의 경우, 성을 매개로 한 폭력과 일반적인 폭행이나 구타의 피해가 동시 발생적이고 둘 간의 분리적 사고가 여의치 않다고 한다면, 직접적으로 성폭력이나 성적인 학대와 무관한 것처럼 보이는 여성의 신체적 폭행피해에 대해서도 새로운 관심과 규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II. 연구문제와 자료

이 연구는 폭력피해에 대한 남녀의 차이를 다루려는 것이다. 기존 논의와 공식적인 통계자료들은 폭행과 구타 피해자는 대개 남성이라는 관념을 유지하는 데 기여해왔다. 하지만 이 연구에서는 여성 또한 구타나 폭행피해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며 피해의 수준이나 정도 역시 남성에 못지않다는 점을 경험적으로 규명할 것이다. 또한 남성들은 중하고 심각한 폭력의 희생자가 되고, 상대적으로 여성들은 경미한 폭력의 희생자가 된다는 관념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성찰이 이루어질 것이다. 왜냐하면 피해의 결과는 신체피해에 국한되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이 연구는 폭력피해에 있어 남녀 간의 차이는 통상의 고정관념과 달리 그리 크지 않다는 점을 보여주려 한다. 폭력피해에 대한 남녀 간의 비교는 피해자의 연령분포에서부터 피해발생의 맥락, 가해자-피해자의 관계, 피해의 결과와 비용, 피해 이후의 심리적·행동상의 변화 등 여러 영역에 걸쳐 진행될 것이다.

이와 같은 작업을 위해 이 연구는 2009년도에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2008년 한국의 범죄피해에 관한 조사연구(VI)』 자료를 활용하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폭력피해의 유형은 주로 폭행과 상해, 협박, 괴롭힘(스토킹)에 한정된다.¹⁾ 협박과 괴롭힘을 분석 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비록 물리적인 접촉이 없다 할지라도 구타하려 하거나 말이나 행동으로 겁을 주는 행위 역시 무형적 폭력으로 규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Ⅲ. 폭력 피해율의 추이

우리나라의 공식통계는 신체적 폭력 피해율에 있어 남녀 간의 성차가 존재한다는 점을 보여준다(<표 1>). 1999년부터 2008년까지 지난 10년 동안 폭행과 상해 피해자의 성별 구성을 보면, 여성 피해자의 규모는 남성 피해자의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전체 폭행 및 상해 피해자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1999년부터 2004년까지는 증가하는 추세였으나, 그 이후로는 다시 낮아지고 있다. 즉 지난 10년 간 폭행 및 상해 피해자 규모를 남녀별로 비교해보면, 전반기 약 5년 동안에는 그 격차가 점점 줄어들고 있었으나, 후반기 약 5년을 보면 그 격차가 다시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²⁾ 2008년 남성 폭행·상해 피해자의 규모는 여성의 약 1.55배이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이하 폭력행위) 피해자의 남녀 비중 추이 역시 폭행·상해의 추이와 유사하다. 다만 폭력행위 피해자 중 남성에 대한 여성의 비중은 폭행·상해의 경우보다 훨씬 더 낮다. 2008년의 경우 전체 폭행·상해 피해자 중 여성의 숫자는 남성의 약 54%이나 폭력행위에서는 43%에 불과하다. 하지만 협박 피해의 경우 사정이 달라진다. 1999년만 해도 여성 협박 피해자의

-
- 1) 강간, 살인, 강도 역시 사람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폭력의 구체적 형태이지만, 강간의 경우 범죄의 성격상 피해의 남녀 차이를 비교하기가 불가능하고, 살인은 피해조사를 통해 그 실태를 파악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강도의 경우 비록 피해자에게 물리적 폭력이 행사되거나 폭력 행사의 위협이 가해지는 것이 사실이나 본질적으로는 재산범죄적 성격이 강하다.
 - 2) 2006년부터는 과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집계되던 일부 폭력의 유형(예, 야간에 발생한 폭행 혹은 상해)이 폭행이나 상해로 재분류됨에 따라 폭행과 상해 발생 건수가 갑자기 증가한다.

규모는 남성 협박 피해자의 74%에 불과했으나, 그 이후 성별에 따른 협박 피해자 숫자의 크기 차이가 점점 좁혀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04년에는 여성 협박 피해자의 수가 남성의 그것을 넘어섰다. 2008년 여성 협박 피해자의 수는 남성의 약 1.12배 수준이다. 공식통계상으로 봤을 때 유형의 신체적·물리적 폭력 피해 가능성은 여성보다 남성이 더 높고, 무형의 언어적·행동적 폭력 피해 가능성은 남성보다 여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남녀 모두 협박 피해보다는 폭행 및 상해 피해를 훨씬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표 1> 공식통계상의 폭행·상해, 협박, 폭력행위 피해자 여성비 추이

(단위: 명)

연도	폭행상해			협박			폭력행위		
	피해자 수		여성비	피해자 수		여성비	피해자 수		여성비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1999	16,417	9,253	0.56	410	304	0.74	92,724	40,255	0.43
2000	18,530	10,334	0.56	500	332	0.66	104,454	45,792	0.44
2001	17,389	10,136	0.58	597	579	0.97	102,365	48,413	0.47
2002	14,419	9,091	0.63	599	564	0.94	78,673	38,481	0.49
2003	17,085	10,615	0.62	615	593	0.96	84,454	44,460	0.53
2004	20,055	15,408	0.77	989	1,047	1.06	96,901	61,185	0.63
2005	20,826	15,531	0.75	1,160	1,050	0.91	99,739	59,434	0.60
2006	76,091	45,720	0.60	1,335	1,383	1.04	50,384	26,213	0.52
2007	112,237	61,201	0.55	1,548	1,576	1.02	35,691	15,314	0.43
2008	115,103	62,409	0.54	1,733	1,934	1.12	36,067	15,426	0.43

* 연도별 여성비 = 연도별 여성 범죄피해자 수/연도별 남성 범죄피해자 수
출처: 대검찰청. 범죄분석(2000-2009년도)에서 재구성함.

그런데 범죄피해조사 결과들은 신체적 폭력피해의 성별 차이에 대해 공식통계와는 다른 내용들을 전달한다. <표 2>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1990년부터 2009년까지 수행된 범죄피해조사 자료에서 남녀의 폭행 및 상해와 협박의 피해 정도를 비교한 결과이다.³⁾ 그 결과에 따르면, 성별에 관계없이 폭행 및 상해 피해율은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것은 증가 추세를 포착할 수 있는 공식통계와는 사뭇 다른 결과이다. 더욱이 폭행·상해 피해율의 남녀 차이, 즉 남성의 폭행·상해 피해율에 대한 여성의 폭행·상해 피해율의 비(ratio)를 보면 1990년대에는 0.2 내외로 낮았으나 2000년대에는 줄곧 0.7 이상이고, 특히 2008년에는 0.96으로 폭행·상해 피해율상의 성차가 매우 좁혀졌음을 알 수 있다. 이 또한 공식통계와는 다른 결과이다.4) 뿐만 아니라 <표 2>의 결과는 구타나 폭행과 같은 직접적인 신체적 폭력 피해는 여성보다 남성에게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기존의 관념에 의문을 제기하게 한다.

<표 2> 범죄피해조사에서의 조사연도별 폭행·상해, 협박 피해 추이의 남녀 비교

(단위: 명, %)

피해발생 연도		1993	1996	1998	1999	2002	2005	2008	
표본연령기준		14세	15세	15세	16세	15세	15세	14세	
표본수	남자	1,015	1,026	1,048	1,008	1,027	1,023	5,112	
	여자	1,014	1,014	1,052	1,035	1,021	1,027	5,559	
폭행·상해	피해 빈도	남자	44	32	32	-	7	4	21
		여자	11	6	7	-	6	3	22
	피해율	남자	4.33	3.12	3.05	-	0.68	0.39	0.41
		여자	1.08	0.59	0.67	-	0.59	0.29	0.40
	여성비	0.25	0.19	0.22	-	0.86	0.75	0.96	
협박	피해 빈도	남자	-	-	-	-	-	-	5
		여자	-	-	-	-	-	-	5
	피해율	남자	-	-	-	-	-	-	0.10

- 3) 물론 지금까지 총 8차례 실시된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범죄피해조사는 조사대상 지역, 표본수, 표집대상, 표집방법, 피해의 측정 방식 등이 전적으로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엄격한 비교는 어렵다. 하지만 서울에 한정하여 조사가 이루어졌던 1990년 피해조사를 제외한 나머지 7개 조사의 경우, 추이 비교를 허용하지 않을 만큼 각각의 조사가 일관성이 결여된 것은 아니라는 판단이 선다.
- 4) 2005년 피해율에 비해 2008년 피해율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 차이가 실제 피해율상의 차이인지 아니면 두 조사에서의 피해측정 방식이 상이한 데서 비롯된 결과인지는 불분명하다. 2005년도 피해 조사에서는 ‘개념 중심’의 측정문항이 사용되었다면, 2008년 피해 조사에서는 ‘행위 중심’의 측정문항이 사용되었다. 이에 대해서는 『2008년 한국의 범죄피해에 관한 조사연구(VI)』 보고서 제3장 조사방법의 개편을 참고하면 좋다.

피해발생 연도			1993	1996	1998	1999	2002	2005	2008
표본연령기준			14세	15세	15세	16세	15세	15세	14세
		여자	-	-	-	-	-	-	0.09
	여성비		-	-	-	-	-	-	0.92
폭행·상해·협박	피해 빈도	남자	-	-	-	45	-	-	26
		여자	-	-	-	20	-	-	27
	피해율	남자	-	-	-	4.46	-	-	0.51
		여자	-	-	-	1.93	-	-	0.49
	여성비		-	-	-	0.43	-	-	0.95

자료: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한국의 범죄피해에 관한 조사연구(Ⅰ)』(VI);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0. 『2000년 세계범죄피해조사 - 한국편』.

한편,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총 8차례의 범죄피해조사 중 협박과 괴롭힘(스토킹)을 별도로 측정하는 것은 2009년도 조사뿐이다. 다만 1991년의 서울범죄피해조사와 2000년도에 실시한 세계범죄피해조사-한국편(전국조사)에서는 폭행과 상해, 협박 피해를 구분하지 않고 동시에 측정하고 있다. 2008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여성의 협박피해율은 0.09%이고 남성의 협박피해율은 0.10%로서 여성의 피해율이 낮다. 이 또한 공식통계와는 다른 특징이다. 협박피해율만의 추이를 알 수 없어 폭행·상해·협박 피해를 동시에 측정했던 1999년을 기준으로 2008년의 변화를 보면, 성별에 관계없이 폭행·상해·협박 피해율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감소의 폭은 여성보다 남성이 더 크다. 1999년의 경우 여성의 폭행·상해·협박 피해율은 남성의 0.43배에 불과했으나, 2008년에는 0.95배로 그 차이가 많이 좁혀졌다.

범죄피해조사 자료 역시 공식통계와 마찬가지로 남녀 모두 협박보다는 폭행과 상해 피해를 더 많이 경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표 2>). 그렇지만 그 차이는 공식통계보다 훨씬 작다. 2008년도 범죄피해조사 결과를 통해서 봤을 때, 여성이 남성에게 비해 상대적으로 직접적·유형적 폭력피해보다는 간접적·무형적 폭력 피해를 더 많이 경험한다는 가설은 유지되기 힘들다.

〈표 3〉 범죄피해조사에서 나타난 재산범죄 및 폭력범죄 유형별 피해율의 남녀 비교
(단위: 명, %)

구 분		표본수		피해빈도		피해율		여성비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재산범죄	사기	5,064	5,524	131	116	2,59	2,10	0,81
	절도	5,021	5,479	174	161	3,47	2,94	0,85
	소계	5,195	5,640	305	277	5,87	4,91	0,84
폭력범죄	강도	5,186	5,621	9	19	0,17	0,34	1,95
	단순폭행	5,187	5,627	8	13	0,15	0,23	1,50
	심한폭행	5,182	5,631	13	9	0,25	0,16	0,64
	성폭행	5,195	5,638	-	2	-	0,04	-
	강제추행	5,194	5,616	1	24	0,02	0,43	22,20
	괴롭힘	5,190	5,623	5	17	0,10	0,30	3,14
	단순협박	5,190	5,635	5	5	0,10	0,09	0,92
	소계1*	5,195	5,640	41	87	0,79	1,54	1,95
	소계2**	5,195	5,640	40	63	0,77	1,12	1,45
	소계3***	5,195	5,640	35	46	0,67	0,82	1,21

* 소계 1: 강도+단순폭행+심한폭행+강제추행+스토킹+단순협박

** 소계 2: 강도+단순폭행+심한폭행+스토킹+단순협박

*** 소계 3: 강도+단순폭행+심한폭행+단순협박

자료: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9. 『2008년 한국의 범죄피해에 관한 조사연구(VI)』.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2008년 한국의 범죄피해에 관한 조사연구』에서는 대인 범죄 피해 유형으로 사기, 절도, 강도, 단순 폭행, 심한 폭행, 성폭행, 강제추행, 괴롭힘(스토킹), 단순 협박 등 9개의 범죄유형에 대한 측정이 이루어졌다. <표 3>은 2008년 범죄피해조사에서 나타난 대인 재산범죄와 대인 폭력범죄의 유형별 피해율을 성별로 비교한 것이다. 그 결과를 보면, 사기나 절도 피해의 경우 남성의 피해율이 여성의 피해율보다 모두 높다. 두 유형을 합친 재산범죄 피해율을 성별로 비교하면 여성의 피해율은 남성의 약 0.84배에 해당한다. 반면 성별에 따른 폭력 피해율의 차이는 재산범죄와 그 양상이 다르다. 통념 혹은 선행연구와는 달리 강도피해율 또한 남성보다 여성이 더 높으며 그 차이는 약 1.95배나 된다. 폭행의 경우에도 정도

가 덜한 단순 폭행은 여성의 피해율이 높고, 중한 폭행 피해율은 남성이 더 높다. 강제추행과 괴롭힘(스토킹)의 경우에도 여성의 피해율이 남성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다. 단순 협박의 경우에는 앞서 살펴본 것처럼 남성의 피해율이 여성보다 더 높다. 그렇지만 단순 협박 피해율의 남녀 간 차이는 심한 폭행에 비하면 그리 큰 편이 아니다.

요컨대 <표 3>의 결과들은 남성이 여성에 비해 폭력범죄 피해 가능성이 높다는 기존의 생각들을 부정하고 있다. 강제추행이나 괴롭힘(스토킹)과 같이 범죄의 구성요건 상 여성의 피해가능성이 더 높은 범죄유형을 제외하더라도 결과는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런데 앞의 결과들은 단지 폭력에 대한 남녀의 피해건수나 피해율만을 보여줄 뿐이다. 동일한 범죄유형이라도 피해발생 맥락, 가해자의 동기, 가해자-피해자의 관계유형, 범죄에 대한 대응방식, 피해결과 등은 성별에 따라 다를 수 있다. 폭력피해에 대한 남녀의 차이(혹은 유사성)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피해양상들을 비교하는 작업이 덧붙여져야 한다.

IV. 폭력 피해자의 특성, 피해발생의 맥락과 결과에 대한 성별 비교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2008년 한국의 범죄피해에 관한 조사연구』는 이전의 조사보다 표본수를 약 4배가량 늘렸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폭력피해가 있었다고 응답한 응답자의 수가 워낙 작기 때문에 피해발생과 그 결과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성별 비교는 가능하지 않다. 따라서 분석의 결과들을 일반화하기는 힘들며 그에 대한 해석은 탐색적인 의미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 아래에서는 이와 같은 한계를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남녀 폭행·상해, 협박·괴롭힘(스토킹) 피해자의 연령별 특성, 피해발생의 맥락, 사건에 대한 대응, 피해의 결과 등을 비교할 것이다. 폭행·상해 피해 사건 수는 남성이 21건, 여성이 22건이고, 협박·괴롭힘 피해 사건 수는 남성 10건, 여성 22건이다.

1. 피해자의 연령분포

폭행·상해 피해자의 연령분포를 보면, 남자는 10대 비율이 45.0%로 가장 높고, 여자는 20대 비율이 38.1%로 가장 높다. 남성 폭행·상해 피해자 10명 중 6명은 20대 이하이고, 여성 폭행·상해 피해자의 절반(52.4%)이 20대 이하이다. 성별에 관계없이 20대 이하의 젊은 층이 폭행·상해의 주된 피해자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폭행 및 상해 피해자의 성별 평균 연령은 남자가 28.8세, 여자가 35.1세로 여성이 좀더 높은 수준이다. 반면 협박·괴롭힘의 경우 남성피해자의 평균 연령(32.3세)이 여성(28.6세)보다 조금 더 높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남성의 경우 40대 피해자가 전체의 40.4%로 가장 높은 데 비해, 여성은 20대 피해자 비율이 50.0%이다.

이밖에도 폭력피해자의 혼인상태, 교육수준, 소득분포, 직업유형을 성별에 따라 비교해봤으나 사례수가 작아 유의미한 차이를 발견하기 힘들었다. 다만 협박·괴롭힘의 경우, 비록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은 아니지만 남성 피해자의 60%가 기혼인데 반해, 여성 피해자의 68.2%는 미혼인 점이 주목할 만 했다. 이는 성별에 관계없이 폭행·상해 피해자의 절반 이상이 미혼인 점과 대조를 이루고 있었다.

〈표 4〉 남녀 폭행·상해, 협박·괴롭힘 피해자의 연령분포

(단위: 명, %)

구분	폭행·상해		협박·괴롭힘	
	남자	여자	남자	여자
10대	9 (45.0)	3 (14.3)	3 (30.0)	3 (13.6)
20대	3 (15.0)	8 (38.1)	1 (10.0)	11 (50.0)
30대	2 (10.0)	2 (9.5)	2 (20.0)	5 (22.7)
40대	3 (15.0)	2 (9.5)	4 (40.4)	3 (13.8)
50대	2 (10.0)	5 (23.8)	-	-
60대 이상	1 (5.0)	1 (4.8)	-	-
평균 연령*	28.8(15.6)	35.1(16.7)	32.3(13.8)	28.6(8.1)

* 괄호 안은 표준편차임

2. 피해의 발생맥락

폭행, 상해, 협박과 괴롭힘(스토킹)은 전형적인 대인범죄들이다. 대개의 대인범죄는 개인 혹은 집단 간 상호작용이나 인간관계를 매개로 발생한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서로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에서 발생할 때조차 사건이 야기되기 직전 두 당사자 사이에 갈등이나 분쟁, 다툼이 있는 게 보통이다. 그렇다면 대인관계, 갈등 또는 다툼이라는 매개요인을 중심으로 봤을 때, 폭력피해를 당하는 남녀 사이에 중요한 차이를 발견할 수 있을까?

〈표 5〉 남녀 폭행 상해 피해자의 피해사건 특성 비교

(단위: 명, %)

구 분	항 목	폭행·상해		협박·스토킹		
		남자	여자	남자	여자	
피해빈도	1회	18 (85.7)	17 (77.3)	7 (70.0)	13 (59.1)	
	2회 이상	3 (14.3)	5 (22.7)	3 (30.0)	9 (40.9)	
	평균 ¹	1.43 (1.21)	1.50 (1.01)	1.80 (1.48)	2.27 (1.78)	
반복피해 ² 여부	그렇다	3 (100.0)	5 (100.0)	1 (33.3)	-	
	아니다	-	-	2 (66.7)	9 (100.0)	
전체 피해자 수	1명	13 (61.9)	17 (77.3)	10 (100.0)	22(100.0)	
	2명 이상	8 (38.1)	5 (22.7)	-	-	
가해자 수	1명	11 (78.6)	17 (85.0)	2 (28.6)	12 (80.0)	
	2명 이상	3 (21.4)	3 (15.0)	5 (71.4)	3 (20.0)	
가해자 성별 ³	남자	13 (50.0)	13 (50.0)	3 (23.1)	10 (76.9)	
	여자	1 (14.3)	6 (85.7)	2 (40.0)	3 (60.0)	
	남녀	-	1 (100.0)	2 (50.0)	2 (50.0)	
가해자의 신분	모르는 사람	3 (21.4)	6 (30.0)	2 (28.6)	3 (20.0)	
	아는 사람	친구	1 (7.1)	-	1 (10.0)	-
		애인(전애인)	-	1 (6.7)	-	1 (6.7)
		학교선후배	4 (28.6)	2 (13.3)	-	2 (13.3)

구 분	항 목	폭행·상해		협박·스토킹	
		남자	여자	남자	여자
	직장동료	1 (7.1)	1 (6.7)	3 (30.0)	1 (6.7)
	직장상사/선생님	1 (7.1)	1 (6.7)	-	1 (6.7)
	거래관계자			-	1 (6.7)
	이웃/잘 아는 사람	3 (21.4)	4 (26.7)	-	4 (26.7)
	안면만 있음	1 (7.1)	2 (13.3)	1 (10.0)	2 (13.3)
	가족	0 (0.0)	5 (25.0)	-	-
	남편/아내	-	2 (13.3)	-	-
	(조)부모	-	2 (13.3)	-	-
	전남편	-	1 (6.7)	-	-
	가해 동기 ⁴	금전적 동기	8 (38.1)	2 (9.1)	2 (20.0)
불화, 감정악화		5 (23.8)	8 (36.4)	4 (40.0)	6 (27.3)
화가 나서		6 (28.6)	7 (31.8)	1 (10.0)	5 (22.7)
보복		3 (14.3)	1 (4.5)	-	3 (13.6)
성충동, 성적 만족추구		-	5 (22.7)	1 (10.0)	4 (18.2)
부주의, 우발적		4 (19.0)	4 (18.2)	1 (10.0)	2 (9.1)
관계회복, 피해자 지배		-	4 (18.2)	-	4 (18.2)
자신을 무시함		1 (4.8)	-	-	-
무전취식 후 도주		-	-	1 (10.0)	-
호객행위		-	-	1 (10.0)	-
모르겠다	2 (9.5)	-	1 (10.0)	9 (40.9)	

* 주 1: 피해경험 5회 이상은 '5회'로 가정함

주 2: '반복피해'란 동일 가해자로부터 반복해서 피해를 당한 사건을 말함.

주 3: 괄호안의 수치는 가해자의 성별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피해자의 성별을 종속변인으로 했을 때의 백분율 값임.

주 4: 해당 항목이 있는 경우의 빈도와 비율을 제시한 것임.

<표 5>는 폭행·상해와 협박 및 괴롭힘이 발생하는 맥락을 가해자-피해자의 관계를 중심으로 정리해본 것이다. 먼저 피해건수를 보면, 폭행·상해이든 협박·괴롭힘이든 남자보다는 여자의 경우에 중복적인 피해를 더 많이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여성이 남성에 비해 지속적 혹은 반복적인 폭력의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높

다는 점을 암시하는 부분이다. 중복적인 피해를 경험한 여성 피해자를 보면, 폭행 및 상해에서는 동일 가해자에 의한 반복적 범행이었으나, 협박·괴롭힘의 경우에는 서로 다른 가해자들에 의해 피해가 야기된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관계없이 폭행·상해의 대부분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1 대 1 관계에서 발생하고 있었다. 다만 피해자가 2명 이상인 폭행·상해 사건은 여성보다 남성이 좀더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가해자가 2명 이상인 폭행·상해 사건의 비율은 피해자가 여자인 경우보다 남자인 경우에 조금 더 높았지만 그 차이는 그리 크지 않았다. 협박·괴롭힘의 경우, 남녀 모두 혼자 피해를 경험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런데 가해자수에 주목하면 남자는 71.4%가 2명 이상의 가해자로부터 협박 혹은 괴롭힘을 당했고, 여자 피해자의 80.0%는 1명의 가해자로부터 시달림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에 기대면, 여성은 가해자와의 1 대 1의 관계 속에서 협박·괴롭힘 피해를 경험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남성은 다수의 가해자로부터 협박이나 괴롭힘을 당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폭행·상해 사건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평소 잘 알고 지내는 사이(가족이나 친척은 제외)에서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의 경우, 가해자의 78.6%는 피해자와 평소 알고 지내는 사이였다. 여성에 대한 폭력 피해 역시 피해자·가해자가 서로 알고 지내는 관계(45.0%)에서 발생한 경우가 많았으나, 남성의 경우와 비교하면 그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대신 여성은 가족(친척이나 전 남편 포함)에 의해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많았다. 폭행·상해 피해를 입은 여성 4명 중 1명은 가해자가 남편이나 (조)부모, 혹은 전 남편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즉 여성에게 발생한 폭행이나 상해 사건의 1/4은 가정폭력에 의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아는 사람’으로부터 폭행이나 상해를 당한 경우, 남성 피해자는 가해자가 학교 선·후배, 이웃/잘 알고 지내는 사람이 많았고, 여성 피해자는 이웃/잘 알고 지내는 사람, 학교 선·후배, 그냥 안면만 있는 사람에 의해 피해를 입은 경우가 좀 더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비록 그 숫자는 작지만 남녀 모두 직장동료나 직장상사/선생님으로부터의 폭행·상해 피해를 보고하고 있는데, 그 결과는 남성 못지않게 여성 또한 직장/학교 내 폭력에 노출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 주목된다. 한편, 전혀 모르는 낯선 사람에 의해 행해진 폭행·상해 피해의 비율은 남성이 21.6%, 여성은 30.0%였던 것으로 집계되었다.

협박 괴롭힘의 경우, 성별에 관계없이 피해자의 70% 이상이 평소 알고 지내는 사람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세부적으로 보면, 남성은 직장동료로부터 협박 혹은 괴롭힘을 당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으나, 여성은 이웃이나 그냥 알고 지내는 사람으로부터 협박이나 괴롭힘을 당하는 경우가 다른 유형에 비해 좀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폭력 사건에서의 가해자-피해자의 성별 조합을 보면, 가해자가 남성인 경우에는 피해자가 남성인 비율(50.0%)과 피해자가 여성인 비율(50.0%)이 동일하다. 하지만 가해자가 여성일 때 피해자가 남성(14.3%)인 경우는 드물고, 피해자가 여성(85.7%)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즉 여성폭력은 동성 간에 이루어지는 경향이 강한 데 반해, 남성폭력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더욱이 ‘남성 가해자-여성 피해자’(50.0%) 비율은 ‘여성 가해자-남성 피해자’(14.3%) 비율보다 훨씬 크다. 이것은 남녀 간의 폭력 문제에 있어서는 남성은 가해자이고 여성은 피해자라는 ‘성별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이와 같은 경향성은 협박·괴롭힘 사건에서도 동일하게 관찰할 수 있다. 협박·괴롭힘에서 ‘남성 가해자-여성 피해자’의 비율(76.9%)은 ‘여성 가해자-남성 피해자’의 비율(40.0%)보다 훨씬 높다. 더욱이 가해자가 여성일 경우 협박 괴롭힘의 대상은 여성이 더 많은 반면, 가해자가 남성일 경우에는 그 대상은 대부분 여성이다. 요컨대 직접적·유형적 폭력이든 간접적·무형적 폭력이든 관계없이 폭력에 있어 ‘남성 가해자-여성 피해자’의 성별화 현상은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다.

폭행·상해, 협박 괴롭힘의 가해 동기는 복합적이며 피해자의 성별에 따라 그 내용을 달리한다. 폭행·상해의 경우를 보면, 피해자가 남성일 때 가해자의 주된 동기는 금전적 이해관계, 불화나 감정악화, 분노 등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피해자가 여성일 때도 가해자의 주된 동기가 불화나 감정악화, 분노인 것은 남성의 경우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하지만 가해자와의 금전적 이해관계가 폭력을 촉발시킨 비율은 남성에게 발생한 사건에 비해 그리 높지 않았다. 반면 가해자의 성충동이나 성적 만족 추구를 위해서, 혹은 피해자와의 관계회복이나 피해자 지배를 위해 여성을 구타하거나 상해를 입힌 경우는 10건 중 4건(40.9%)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여성에 대한 폭행이나 구타가 성폭력이나 성학대, 성적인 지배력 행사와 무관하지 않다는 기존의

입장을 뒷받침한다. 여성에게 행사되는 일반폭력이 성폭력이나 여성에 대한 지배와 전혀 무관하지 않다는 점은 협박 괴롭힘의 경우에도 나타난다(36.4%). 즉 여성에 대한 협박 괴롭힘 사건의 경우, 3건 중 1건은 피해자에 대한 가해자의 성폭력이나 성적 지배의 욕구로 인해 야기된 것으로 드러났다.

3. 피해자의 대응

협박 괴롭힘 사건의 경우 피해자들은 성별에 관계없이 가해자의 공격행동에 대해 방어행동을 전혀 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렇지만 폭행·상해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저항하거나 모종의 방어행동을 취했던 사례들이 발견되었으며 그 반응양식은 성별에 따라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표 6>). 남자 피해자의 경우 10명 중 7명(76.2%)은 가해자에게 아무런 저항도 대응도 하지 않았지만, 여성피해자의 그 비율은 13.6%에 불과했다.⁵⁾ 즉 폭행사건이 발생했을 때 여성피해자 10명 중 8명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방어행동이나 적절한 대응조치를 취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폭력사건에서의 여성 피해자의 ‘저항에 있어서의 수동성이나 무력성(無力性)’을 지적한 선행연구들과 좀 다른 측면을 갖고 있어 주목할 만하다. 선행연구들은 남성 가해자에 대한 저항에 있어 여성 피해자들이 수동적인 것을 문화적인 효과로 풀이한다. 가부장적 문화는 여성은 자신을 보호하고 경제적 안정을 위해 남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는 것이다. 가부장적 문화는 여성의 수동성과 ‘여성적인’ 행동에 보상이 주어진다는 이미지를 강화하고, 미디어에 의해 조장·증폭되는 성역할 고정관념은 남성지배와 그에 대한 여성의 저항불가능성에 대한 남녀의 인식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Belknap, 2007: 278-279).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의 폭력에 대한 여성 피해자의 대응은 신체적 공격과 같은 적극적인 형태라기보다 ‘소리 지르기, 경찰을 부르겠다는 등의 위협이나 경고’(40.9%)나 ‘탈출, 도망(시도)’(18.2%)과 같은 소극적 형태가 많았다는 점은 자신을 공격하는 대상에 대해 저

5) 표에는 제시되어 있지 않지만, 여성 피해자의 방어나 대응은 피해자 혼자 있을 때(71.4%)보다 사건 현장에 다른 사람들(12세 미만 아동은 제외)과 같이 있을 때(93.3%) 더욱 강하게 표출되었다. 이와 대조적으로 남성 피해자의 경우에는 혼자(16.7%)있거나 혹은 주변에 다른 사람들(26.7%)이 있거나에 크게 상관없이 방어나 대응에 소극적이었다.

항하는 여성은 ‘조건화된’ 저항기술을 써야 한다는 가부장적 문화의 요청에 부합하는 것처럼 보인다(Estrich, 1987). 여성의 대응방식은 분명 남성의 그것과 대조를 이루고 있었다. 가해자의 폭행이나 구타에 대해 저항한 남성 피해자의 경우, 5명 중 3명이 신체적 격투로써 자신을 방어하려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성의 방어행동과 가부장 문화, 성역할 고정관념과의 관계를 심층적으로 논증하는 일은 자료상의 제약으로 인해 더 이상 진전되기 어렵다.

〈표 6〉 폭행·상해 사건에서의 피해자 대응방식에 대한 성별 비교

(단위: 명, %)

구 분	항 목	남자	여자
방어·대응 여부	아니다	16 (76.2)	3 (13.6)
	그렇다	5 (23.8)	19 (86.4)
	신체적 격투	3 (14.3)	3 (13.6)
	소리 지르기 등 위협, 경고	2 (9.5)	9 (40.9)
	협상, 애원 등 사정	-	1 (4.5)
	탈출, 도망(시도)	-	4 (18.2)
	경찰, 경비원 도움요청	-	2 (9.1)
대응행동 영향	피해악화 차단	2 (40.0)	10 (52.6)
	가해자 체포 도움 됨	1 (20.0)	1 (5.3)
	탈출·도피 도움 됨	-	5 (26.3)
	상해·재산피해 확대	-	2 (10.5)
	가해자의 공격성 증폭	2 (40.0)	1 (5.3)

가해자의 폭력행동에 대해 피해자가 방어하거나 대응하는 행동이 피해결과에 미치는 영향은 피해자의 성별에 따라 다소 다르게 나타났다(<표 6>). 남성 피해자의 경우, 피해자의 방어적 행동이 피해를 축소 혹은 차단하는 효과(40.0%)와 가해자의 공격성을 오히려 증폭시키는 효과(40.0%)는 서로 비슷한 수준이었다. 하지만 여성 피해자의 경우, 피해자의 방어적 행동은 피해를 축소 혹은 차단하거나(52.6%) 피해자가 탈출·도피하는 데 도움(26.3%)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폭행·상해, 협박·괴롭힘 사건에 대한 남녀 피해자의 신고행동 비교

(단위: 명, %)

구 분		폭행·상해		협박·괴롭힘	
		남자	여자	남자	여자
신고했다		4 (19.0)	6 (27.3)	0 (0.0)	0 (0.0)
	범인검거·처벌	1 (25.0)	3 (50.0)	-	-
	손실(피해)회복	1 (25.0)	-	-	-
	재발방지	-	3 (50.0)	-	-
	경찰 예방활동 개선	1 (25.0)	-	-	-
	범죄이니까	1 (25.0)	-	-	-
	합	5 (100.0)	6 (100.0)	-	-
신고하지 않았다		17 (81.0)	16 (72.7)	10 (100.0)	22 (100.0)
	피해가 심각하지 않아서	7 (41.2)	7 (43.8)	3 (30.0)	10 (45.5)
	개인적으로 처리	4 (23.5)	4 (25.0)	4 (40.0)	4 (18.2)
	증거가 없어서			-	1 (4.5)
	경찰조치 불신	-	1 (6.3)	-	1 (4.5)
	경찰이 귀찮게 할까봐			-	2 (9.1)
	범인이 아는 사람이어서	3 (17.6)	1 (6.3)	3 (30.0)	2 (9.1)
	보복이 두려워서	-	2 (12.5)		
	창피하고 수치스러워서	1 (5.9)	1 (6.3)	-	1 (4.5)
	기타	2 (11.8)	-	-	1 (4.5)
합	17 (100.0)	16(100.0)	10 (100.0)	22 (100.0)	

한편, 폭력사건에 대한 경찰 신고 여부를 측정한 결과, 남녀 모두 낮은 신고율을 보였다(〈표 7〉). 폭행·상해 사건에 대한 남성 피해자의 경찰 신고율은 19.0%였으나, 여성 피해자의 신고율은 27.3%로 조금 더 높았다. 신고 이유에 대한 남녀의 응답결과는 흥미롭다. 남성 피해자의 경우 ‘범인의 검거·처벌’, ‘손실(피해)회복’, ‘경찰 예방활동 개선’, ‘범죄이기 때문에’ 등 그 이유가 제각각이지만, 여성 피해자는 주로 범인 검거·처벌이나 재발방지 등 가해자에 대한 응보나 역제의 동기에서 신고가 이루어진 것으로 조사되었다. 신고하지 않은 이유로는 남녀 모두 피해가 경미하거나,

다른 방식 혹은 개인적으로 처리했기 때문이라는 응답비율이 가장 높았다. 그렇지만 가해자의 보복이 두렵거나 피해를 당한 사실이 창피하고 수치스러워서 신고하지 않았다는 응답비율은 여성(18.8%)이 남성(5.9%)보다 조금 더 높았다.

4. 피해의 결과

범죄는 여러 가지 유형의 피해결과와 비용을 야기한다(Cohen, 2005). 폭행과 구타는 직접적으로 피해자의 신체적 상해를 야기함으로써 의료적 치료비용, 생산 활동이나 학업에 참여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생산(학업) 손실 등의 비용을 낳는다. 뿐만 아니라 범죄피해를 신고하고 그 이후 전개되는 형사절차(이를테면 피해자 진술을 위해 경찰서나 검찰청을 방문하는 일 등)로 인한 비용이 발생하기도 한다. 범죄피해는 차후의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비용도 야기한다. 대인범죄의 피해자들에게는 사건 이후 대중교통 대신 택시를 탄다거나 특정 장소나 사람을 회피하거나, 어두워지면 외출을 자제하는 등의 행동변화에 따른 비용 손실이 발생한다. 혹은 범죄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보험제도에 의존함으로써 추가적인 비용이 나타나기도 한다. 사회적으로는 형사사법기관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 범죄가 발생했을 때 이를 처리하기 위한 행정비용, 범죄피해자를 돕기 위한 비용 등이 유발된다.

범죄피해가 유발하는 비용은 측정 가능한 유형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범죄는 심리적·정신적 피해와 후유증, 혹은 범죄에 대한 두려움처럼 쉽게 측정하기 힘든 무형의 비용을 낳기도 한다. 더군다나 이와 같은 무형적 비용이 범죄로 인한 유형적 피해보다 더 크다고 평가되고 있다(Brand and Price, 2000). 이에 아래에서는 폭행·상해 및 협박·괴롭힘이 남·여 피해자들에게 어떤 피해와 비용을 야기하고 있고 그 결과는 어떠한지 살펴볼 것이다.

가. 유형적 피해

협박과 괴롭힘의 경우와 달리 폭행과 상해는 그 행위의 본질상 피해자의 신체적 침해와 부상을 야기한다. 앞의 <표 3>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남성은 상대적으로 심한 폭행 피해가 많았고 여성은 상대적으로 단순 폭행 피해가 많았던 것으로 조사되

었다. <표 8>은 이 점을 부연해서 보여주고 있다. 실제 피해자에게 폭행이나 구타가 가해진 비율은 여성 피해자(45.5%)보다 남성 피해자(66.7%)가 좀더 높다. 결과적으로 폭행으로 인해 실제 신체적 피해가 발생한 비율 역시 남성 피해자(61.9%)가 여성 피해자(40.9%)보다 더 높다. 병원 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부상을 당한 피해자수는 남성이 13명 중 5명(38.5%)이며, 여성은 9명 중 3명(33.3%)이다.

<표 8> 폭행·상해 사건에서의 피해자 대응방식에 대한 성별 비교

(단위: 명, %)

구 분	항 목	남자	여자
폭행여부	폭행함	14 (66.7)	10 (45.5)
	폭행 시도함	7 (33.3)	12 (54.5)
신체피해여부	신체피해 없음	8 (38.1)	13 (59.1)
	칼에 의한 부상	1 (4.8)	2 (9.1)
	신체골절	2 (9.5)	2 (9.1)
	장기손상	2 (9.5)	-
	타박상	9 (42.9)	5 (22.7)
치료여부 및 장소	의료적 처치 받지 않음	5 (38.5)	3 (33.3)
	집에서	3 (23.1)	2 (22.2)
	학교·직장의 의무실에서	-	1 (11.1)
	개인병원	1 (7.7)	3 (33.3)
	종합병원	4 (30.8)	-
의료비용	평균비용(만원/표준편차)	126.2(121.7)	110(164.6)
부상에 따른 생산성 손실	있다	5 (38.5)	4 (44.4)
	평균(일/표준편차)	47.8 (53.5)	49.8 (86.9)
	없다	8 (61.5)	5 (55.6)

신체적 상해는 치료에 필요한 의료비용은 물론 의료적 치료에 따른 학업이나 노동의 포기과 같은 생산성 손실이라는 비용을 초래한다(<표 8>). 폭행·상해의 피해로 인한 평균 의료비용은 남자가 126.2만원, 여자가 110.0만원으로 집계되고 있다. 그러나 각각의 사례수가 적고 사례별 편차⁶⁾도 비교적 크기 때문에 결과를 해석하는

데 주의가 요망된다. 상해피해로 학교결석, 직장에 병가 혹은 휴가를 내거나 영업활동, 가사활동을 하지 못하는 등 생산성 손실여부와 손실일수를 측정한 결과, 남자 상해 피해자의 38.5%와 여자 상해 피해자의 44.4%가 생산성 손실을 보고하였다. 상해 피해자 1인당 생산성 손실일수는 남자가 47.8일(표준편차: 53.5일)이고 여자가 49.8일(표준편차: 86.9일)이다. 그렇지만 이 경우에도 작은 사례수와 개별 사례 간 높은 편차로 인해 나타난 결과를 액면 그대로 수용하기는 어렵다.⁷⁾

나. 무형적 피해

범죄로 인해 피해자가 겪는 무형적 피해의 대표적 형태는 심리적·정신적인 영향 혹은 후유증, 가족관계의 변화, 범죄에 대한 두려움의 야기 등이다. 이와 같은 피해들은 쉽게 계량화되지 않는다. 범죄피해 이후 정신적·심리적 영향이나 후유증을 경험하는 것은 남성보다 여성 피해자에게 있어 보다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표 9>). 폭행·상해 피해자 중 심리적 후유증을 경험하지 않았다는 응답비율은 남성이 42.9%인데 비해, 여성은 13.6%에 불과하다. 협박·괴롭힘 피해의 경우에도 여성 피해자는 남성 피해자에 비해 심리적 후유증을 느끼는 정도가 훨씬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로 인한 심리적 후유증은 복합적으로 발현된다. 우울증(63.6%)은 폭행이나 상해 피해를 당한 여성들이 경험하는 대표적인 후유증이다. 이밖에도 여성 폭행·상해 피해자들은 두려움, 남성 혐오증과 타인에 대한 불신감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폭행·상해 피해를 당한 남성 또한 다른 유형의 심리적 영향에 비해 우울증(28.6%)을 경험하는 경향이 강했으며, 두려움이나 타인을 회피하는 행동상의 변화가 있었음을 보고하고 있다. 협박·괴롭힘 피해가 있었던 남성에게 나타난 가장 일반적인 심리적 상태는 우울이었으며, 여성의 경우에는 두려움과 우울, 불면증 등으로 고통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여성 피해자의 경우, 폭행·상해

6) 남자 피해자의 경우 1만원 1명, 50만원 1명, 80만원 1명, 200만원 1명, 300만원 1명이고, 여자 피해자의 경우 10만원 1명, 20만원 1명, 300만원 1명이다.

7) 남자 피해자의 생산성 손실일수의 분포를 보면 2일 1명, 12일 1명, 15일 1명, 90일 1명, 120일 1명이며, 여성 피해자는 4일 1명, 5일 1명, 10일 1명, 180일 1명이다. 여성의 생산성 손실일수가 남성보다 높게 평가된 데에는 여성 1명의 극단적 피해사례 때문이다.

나 협박 괴롭힘의 후유증으로 인해 심리상담이나 정신과 치료가 필요했다고 보고한 사례도 각각 1건 씩 있었다.

〈표 9〉 폭행 상해 사건의 피해자 성별에 따른 피해의 심리적 후유증

(단위: 명, %)

구 분	항 목	폭행·상해		협박·괴롭힘		
		남자	여자	남자	여자	
심리적 후유증*	우울함	6 (28.6)	14 (63.6)	4 (40.0)	6 (27.3)	
	고립감	1 (4.8)	-	1 (10.0)	2 (9.1)	
	두려움	2 (9.5)	3 (13.6)	-	7 (31.8)	
	불면증·악몽 등	1 (4.8)	-	-	4 (18.2)	
	사회관계상의 어려움	-	1 (4.5)	1 (10.0)	-	
	성적 수치심	-	-	-	1 (4.5)	
	타인회피(이사, 전학)	2 (9.5)	-	-	1 (4.5)	
	근심, 걱정	-	1 (4.5)	-	-	
	남성혐오증	-	2 (9.1)	-	-	
	불신감	-	1 (4.5)	-	-	
	울화, 억울함	1 (4.8)	-	-	-	
	없음	9 (42.9)	3 (13.6)	4 (40.0)	3 (13.6)	
심리상담치료 여부	아니오	12(100.0)	18 (94.7)	6(100.0)	18 (94.7)	
	예		-	1 (5.3)	-	1 (5.3)
		치료기간	-	5일	-	15일
		치료비용	-	40만원	-	3만원
가족생활에의 영향	매우 부정적 영향 미침	3 (14.3)	2 (9.1)	1 (10.0)	3 (13.6)	
	대체로 부정적 영향 미침	7 (33.3)	14 (63.6)	2 (20.0)	6 (27.3)	
	그저 그렇다	2 (9.5)	4 (18.2)	2 (20.0)	5 (22.7)	
	부정적 영향 없음	5 (23.8)	1 (4.5)	4 (40.0)	7 (31.8)	
	전혀 부정적 영향 없음	4 (19.0)	1 (4.5)	1 (10.0)	1 (4.5)	
	평균(표준편차)	3.00(1.41)	3.68(.89)	2.80(1.23)	3.14(1.17)	

* 주: 해당 항목이 있는 경우의 빈도와 비율을 제시한 것임.

범죄피해는 가족관계나 가족생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전혀 부정적 영향이 없었다.”를 1점으로 하고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를 5점으로 하는 척도로써 폭력이 피해자의 가족생활에 미친 영향을 측정된 결과, 비록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은 아니지만 남성보다는 여성에게 가해지는 부정적 영향의 정도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피해에 대한 경험은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는 수준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Gomme, 1986; Keane, 1995; McCoy et al., 1996; Roundtree, 1998). 피해에 대한 두려움은 그 피해를 회피하기 위한 행동을 유발한다. 이에 폭력 피해 이후 피해자의 회피적 행동이나 범죄에 대한 두려움 수준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탐구해왔다.

회피적 행동을 측정하기 위해 “이 사건 이후, 나는 가급적 밤에 혼자 택시를 타지 않는다.” “이 사건 이후, 나는 우범지역을 가급적 우회하거나 피해서 다닌다.” “이 사건 이후, 나는 가급적 늦게 귀가하지 않는다.”의 세 가지 문항의 값을 합산하여 ‘피해 이후의 회피행동’이라는 복합지수를 구성하였다. 변화된 범죄의 두려움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밤에 혼자 집에 있기가 예전보다 더욱 두려워졌다.” “밤에 혼자서 골목길을 다니기가 예전보다 더욱 두려워졌다.” “낮선 사람과 단둘이 엘리베이터를 타면 예전보다 더욱 두려움을 느낀다.”의 세 문항의 값을 합산하여 ‘피해 이후의 범죄두려움’이라는 복합지수를 구성하였다. 각각의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를 1점으로 하고 ‘매우 그렇다’를 5점으로 하는 5점 척도로 측정되었다. 폭행·상해 및 협박 괴롭힘 피해경험이 있는 응답자를 중심으로 ‘피해 이후의 회피행동’과 ‘피해 이후의 범죄두려움’의 문항 간 내적일관성 정도를 측정된 결과 모두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회피행동과 범죄두려움 수준의 변화에 대한 성별 비교 결과는 <표 10>에 제시되어 있다.

그 결과를 보면, 비록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은 아니지만 여성 폭행·상해 피해자들의 회피행동이 남성 피해자에 비해 좀더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협박 괴롭힘의 경우도 범죄피해 이후의 회피행동은 남성보다 여성에게서 더 강화되고 있었다. 하지만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은 아니었다. 폭행·상해 피해는 특히 여성들의 범죄에 대한 두려움 수준을 높이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 결과

역시 통계적인 의미를 갖지는 못했다. 그렇지만 협박·괴롭힘 피해는 여성들의 범죄에 대한 두려움 수준을 유의미하게 증폭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0〉 폭력피해 이후의 회피행동 및 두려움 수준의 변화에 대한 남녀 비교

측정 항목		폭행·상해		협박·괴롭힘	
		남자	여자	남자	여자
회피 행동	나는 가급적 밤에 혼자 택시 타지 않는다.	2,52(1,21)	2,77 (.81)	2,60 (1,27)	3,27 (1,16)
	나는 우범지역을 가급적 우회하거나 피해서 다닌다.	3,05 (1,12)	3,27 (1,03)	2,90 (1,37)	3,73 (.99)
	나는 가급적 늦게 귀가하지 않는다	2,81 (1,12)	3,50 (.91)	2,90 (1,29)	3,18 (.96)
	복합지수	8,38 (3,07)	9,55 (2,09)	8,40 (3,74)	10,18 (2,87)
	사례수	21	22	10	22
	t-값	-1,45		-1,48	
	신뢰도 계수(α)	,79		,93	
범죄 두려움	밤에 혼자 집에 있기가 예전보다 더욱 두려워졌다	2,57 (.98)	2,91 (.92)	2,40 (1,08)	3,45 (1,14)
	밤에 혼자 골목길을 다니기가 예전보다 더욱 두려워졌다	2,95 (1,12)	3,36 (1,18)	2,60 (1,08)	3,86 (1,04)
	낯선 사람과 단둘이 엘리베이터를 타면 예전보다 더욱 두려움을 느낀다	2,57 (1,21)	3,09 (.97)	2,50 (1,08)	3,73 (.99)
	복합지수	8,10 (3,02)	9,36 (2,84)	7,50 (3,03)	11,05 (2,95)
	사례수	21	22	10	22
	t-값	-1,42		-3,13**	
	신뢰도 계수(α)	,91		,94	

주: 평균(표준편차)

*: $p < .05$, **: $p < .01$

폭력피해가 두려움에 미치는 영향은 피해의 유무에 따른 두려움 수준을 비교해보면 확연히 드러난다. 성별에 관계없이 폭행·상해 피해경험이 있는 집단은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구타(폭행)나 괴롭힘 피해에 대한 두려움 수준이 유의미하게 높다. 협박·괴롭힘에 대한 피해경험은 여성 집단에 한해, 구타(폭행) 혹은 괴롭힘 피해에

대한 두려움을 고양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지만 남성 집단에서는 이러한 효과가 발견되지 않았다. 이상의 결과들은 폭행이나 구타, 협박이나 괴롭힘을 경험한 피해자들이 재차 유사한 피해를 당하는 것에 대해 더 많이 걱정하고 두려움을 느낀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여성 피해자들이 중복적인 피해에 대해 더 많은 두려움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1〉 피해 이후의 회피행동 및 두려움 수준의 변화에 대한 남녀 비교

구 분	남자				여자			
	폭행·상해 피해		협박·괴롭힘 피해		폭행·상해 피해		협박·괴롭힘 피해	
	없음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있음
구타(폭행) 피해 두려움	2,33	3,05	2,34	2,30	2,74	3,23	2,74	3,32
사례수	5,174	21	5,185	10	5,618	22	5,618	22
t-값	-3.45**		.12		-2.24*		-2.67**	
괴롭힘 피해 두려움	2,01	2,43	2,02	2,00	2,41	2,91	2,41	3,59
사례수	5,174	21	5,185	10	5,618	22	5,618	22
t-값	-2.90*		.06		-2.31*		-5.48***	

주: 평균(표준편차)

*: $p < .05$, **: $p < .01$, ***: $p < .001$

요약해보면, 폭행·상해, 협박·괴롭힘과 같은 신체 언어적 폭력은 특히 여성들에게 심라·정서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더 많이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남성 피해자들에 비해 여성 피해자들이 폭력피해 사건 이후 동일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 수준이 더 높은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V. 논의와 한계

이 글은 “여성은 남성에 비해 신체적 폭행 피해의 위험성이 낮은가?”라는 질문에 대한 해답을 추구하기 위해 기획되어졌다. 그간 폭행, 특히 심한 폭행 피해자의 대

부분은 남성들이라는 관념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비록 몇 가지 측면에서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본문의 분석결과들은 이러한 관념에 도전할 수 있는 중요한 단초들을 제공하고 있다.

2000년대에 들어와서 수행된 범죄피해조사 결과들은 1990년대에 수행된 피해조사 결과와 달리 여성의 폭행피해율이 큰 폭으로 감소되었음을 일관되게 보여준다. 이런 기준에서 본다면 우리나라 여성들은 폭행이나 구타의 위험성으로부터 점차 자유로워지고 있다는 평가가 가능할지 모르겠다. 타인으로부터 폭행이나 상해의 피해를 경험했다는 남성들의 보고율 또한 크게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주목할 점은 피해조사 결과를 통해 봤을 때, 여성의 폭행·상해 피해율과 남성의 폭행·상해 피해율과의 격차가 과거에 비해 많이 좁혀졌다는 사실이다. 남성의 피해율은 빠르게 감소하는 데 비해 여성의 피해율은 더디게 줄어들고 있음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여성에 대한 피해 위험성이 더 커지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가장 최근의 조사에서는 두 집단의 그 피해율이 거의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사회에서 남성에 비해 여성이 폭력피해로부터 더 자유로운 것은 아니라는 점을 시사한다. 피해조사 결과들은 공식통계로써는 포착할 수 없는, 한국사회에서의 여성의 폭력 피해와 관련된 중요한 쟁점들을 제기하고 있다.

여성주의 범죄학자들은 성폭력에 있어 가해자는 남성이고 피해자는 여성이라는 성별화 현상이 나타난다고 말한다. 흥미롭게도 본문의 분석결과는 이와 같은 ‘성폭력 피해의 성별화’를 폭행·상해의 경우에도 적용해볼 수 있는 여지를 남기고 있다. 폭행 및 상해 범죄에 있어 가해자·피해자의 성별 조합을 통해 봤을 때, ‘여성가해자-남성피해자’의 관계보다는 ‘남성가해자-여성피해자’의 관계가 훨씬 더 지배적인 형태였다. 이러한 특성은 협박·괴롭힘의 경우에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더욱이 남성가해자-여성피해자의 경우 가해자의 성충동이나 성적인 만족추구를 위해, 혹은 피해자와의 관계회복이나 피해자 지배를 위해 남성이 여성을 구타하거나 상해를 입힌 경우가 5명 중 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협박 및 괴롭힘의 경우에도 이러한 동기여 의해 여성에게 간접적 혹은 무형의 폭력을 행사한 경우가 3건 중 1건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결과는 여성에 대한 폭행과 구타가 성폭력이나 성적인 지배력의 행사와 무관하지 않다는 기존의 입장을 확인시켜준다고 생각된다. 폭행·상해 피해 여

성 4명 중 1명은 남편, (조)부모, 전 남편 등에 의해 피해를 입은 것으로 드러나 가정폭력이 상당히 심각한 수준에 도달해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한편, 서구의 여성주의 범죄학자들은 남성지배적인 가부장제 문화 체계 하에서는 여성의 폭력 피해가 감추어지는 경향이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2008년 기준 한국의 피해조사 자료에 의하면 폭행 및 상해 피해에 대한 신고율은 남성보다 여성이 오히려 조금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여성들은 남성들에 비해 가해자의 공격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한 것으로 보고되었고, 그러한 적극적 대응이 피해를 최소화하거나 회피하는 데 긍정적으로 기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대응방식에 있어서는 신체적 맞대응을 주로 했던 남성피해자와 달리 소리 지르기나 경고, 혹은 탈출 등에 의존하는 경향이 많아 대조를 보였다. 이와 같은 간접적 대응방식은 여성주의 범죄학자들이 지적하는 여성피해자의 ‘저항에 있어서의 수단 선택성’을 떠올리게 한다. 가해자와의 대면에 있어 회피적 대응이라는 특성은 여성의 수동성과 의존성을 강조하는 가부장제 문화의 산물이라는 것이다.

폭행·상해는 직접적으로 피해자의 신체적 부상이라는 비용을 유발한다. 하지만 폭행·상해의 비용은 피해자의 부상치료에 필요한 의료비용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부가적으로 치료를 위해 중단할 수밖에 없는 학업, 직장생활, 가사활동 등의 생산성 손실을 야기한다. 그와 같은 비용의 측면에서 있어 남녀 간의 성별 차이는 두드러지지 않았다. 요컨대 분석 결과들은 비용의 측면만을 고려하더라도 폭행 및 상해, 협박 및 괴롭힘 등 폭력이 여성에게 미치는 피해는 결코 남성의 그것에 비해 덜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조심스럽게 개진한다.

범죄피해는 유형적 피해에만 그치지 않는다. 특히 여성폭력 피해자에게는 심리적·정신적 후유증이나 범죄에 대한 두려움 수준의 증가와 같은 쉽게 측정하기 힘든 무형의 피해로부터도 크게 고통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폭행·상해 피해나 협박 괴롭힘 피해를 경험한 여성들은 그렇지 않은 여성들에 비해 이러한 유형의 피해에 대한 두려움 수준이 유의미하게 높았다. 이처럼 폭력피해로 말미암은 심리학적 비용은 남성보다 여성에게 있어 더 크고 오래 지속되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필자는 서두에서 이 글을 한국에서 폭행과 협박, 괴롭힘의 피해를 당하는 여성들의 현실을 남성 피해자와의 대조를 통해 들춰보고자 하는 하나의 탐색적 작업으로

규정하였다. 피해사실이 보고된 사례수의 절대적인 부족으로 말미암아 정교한 분석과 비교연구는 사실상 가능하지 않았다. 따라서 분석결과들은 제한적인 의미만을 갖는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글을 통해 한국에서 여성들이 경험하는 폭력피해가 성폭력이나 성학대에 한정되지 않고 일반폭력의 문제까지 확장되어 나타난다는 사실을 어렵듯이 확인할 수 있었던 점은 큰 수확이 아닐 수 없다. 더욱이 일반 폭력피해는 성폭력이나 가정폭력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는 징후도 포착되었다. 이는 여성에게 가해지는 남성에 의한 일반적인 폭행 및 구타와 성폭력, 성적인 지배간의 어떤 유의미한 연관성을 암시한다. 그렇지만 자료상의 제약으로 인해 더 이상의 논의 전개에는 무리가 따른다. 향후 여성폭력 피해에서 있어 일반폭력과 성폭력의 ‘중층결합’의 문제가 심도 있게 다뤄지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김은경·최수형·박정선, 2009. 『2008년 한국의 범죄피해에 관한 조사연구(VI)』.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김지선·김지영·홍영오·박미숙, 2006. 『한국의 범죄피해에 관한 조사연구(V)』.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박순진·최영신, 2000. 『한국의 범죄피해에 관한 조사연구(III)』.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심영희·김준호·최인섭·조정희·박정선, 1991. 『서울의 범죄피해에 관한 조사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장준오, 2000. 『세계 범죄피해조사 - 한국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최인섭·기광도, 1998. 『한국의 범죄피해에 관한 조사연구(II)』.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최인섭·김지선·황지태, 2003. 『한국의 범죄피해에 관한 조사연구(IV)』.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최인섭·박순진, 1995. 『한국의 범죄피해에 대한 조사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Belknap, Joanne. 2007. *The Invisible Woman: Gender, Crime, and Justice* (3rd Edition). Wadsworth, Cengage Learning(윤옥경·강은영·김지선·신연희·전영실 옮김. 2009. 여성범죄론 - 젠더, 범죄와 형사사법. 센게이지러닝코리아).
- Bergen, Raquel Kennedy. 2004. "Studying Wife Rape." *Violence Against Women* 10: 1407-1416.
- Brand, Sam and Price, Richard. 2000. *The Economic and Social Costs of Crime*. London: Home Office Research Study 217.
- Braungart, Margaret M., Braungart, Richard G., and Hoyer, William J. 1980. "Age, Sex, and Social Factors in Fear of Crime." *Sociological Forces* 13: 55-66.
- Catalano, Shannan. 2004. *Criminal Victimization, 2003*. Bureau of Justice Statistics. U.S. Department of Justice, September, 12pp.
- Cohen, L. E. and Felson, M. 1979. "Social Change and Crime Rate Trends: A Routine Activity Approach."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44: 588-608.

- Cohen, Mark. 2005. *The Cost of Crime and Justice*. New York: Routledge.
- Edleson, Jeffrey L. 1999. "The Overlap between Child Maltreatment and Woman Battering." *Violence Against Women* 5: 134-154.
- Estrich, S. 1987. *Real rape: How the legal system victimizes women who say no*.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Goffredson, Michael R. 1986. "Substantive Contributions of Victimization Surveys." In *Crime and Justice: An Annual Review of Research*.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 Gomme, I. M. 1986. "Fear of crime among Canadians: A multi-variate analysis." *Journal of Criminal Justice* 14: 249-258.
- Keane, C. 1995. "Victimization and fear: Assessing the role of offender and offence." *Canadian Journal of Criminology* 37: 431-455.
- LaGrange, Randy L. and Ferraro, Kenneth F. 1989. "Assessing Age and Gender Differences in Perceived Risk and Fear of Crime." *Criminology* 27: 697-718.
- Madriz, Esther. 1997. *Nothing Bad Happens to Good Girls: Fear of Crime in Women's Lives*.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McCoy, H. V., Wooldredge, J. D., Cullen, F. T., Dubeck, P. J., and Browning, S. L. 1996. "Lifestyles of the old and not so fearful: Life situation and older person's fear of crime." *Journal of Criminal Justice* 24: 191-205.
- Meyer, Shannon-Lee, Vivian, Dina, and O'Leary, K. Daneil. 1998. "Men's Sexual Aggression in Marriage." *Violence Against Women* 4: 415-435.
- Miethe, T. D., Stafford, M. C., and Long, J. S. 1987. "Social Differentiation in Criminal Victimization: A Test of Routine Activities/Lifestyle Theorie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52: 184-194.
- Ortega, Suzanne T. and Myles, Jessie L. 1987. "Race and Gender Effects on Fear of Crime: An Interactive Model with Age." *Criminology* 25: 133-152.
- Roundtree, P. W. 1998. "A reexamination of the crime-fear linkage." *Journal of Research in Crime and Delinquency* 35: 341-372.

- Tjaden, Patrica and Thoennes, Nancy. 2000. "Prevalence and Consequences of Male-to-Female and Female-to-Male Intimate Partner Violence as Measured by the National Violence Against Women Survey." *Violence Against Women* 6: 142-161.
- Warr, Mark. 1984. "Fear of Victimization: Why Are Women and the Elderly More Afraid?" *Social Science Quarterly* 65: 681-702.
- Young, Vernetta D. 1992. "Fear of Victimization and Victimization Rates among Women: A Paradox?" *Justice Quarterly* 9: 419-442.

Violence Victimization and Gender in Korea : focus on physical assault, threat, and harassment

Kim, Seong-Eon*

The subject of 'women who are beaten or threatened by others except beaten wife has rarely been given any serious criminological or victimological space. It has bolstered presumptions that all the victims of general assaults are male and that women are never vulnerable, fearful or at great risk to violence victimization. Women have not been ascribed legitimate or real victim status and have been largely invisible as victims.

But 2009 Korean Crime Victim Survey (KCVS) found that in 2008, 0.49 percent of women interviewers had experienced some physical violence, verbal threat or stalking, compared to 0.51 percent of men. This means that women are no less free from daily violent victimization than men in our society.

In these contexts, this article seeks to acknowledge that there are the significant gaps in our knowledge about gendered patterns of risk to violence victimization, fear of becoming victimized, experiences and responses to victimization and to broaden understanding of violence against women. Using data from the 2009 KCVS, I will describe how women's violence is associated with the patriarchal cultural characteristics, as well as the individual victim-offender relationship.

This study makes an issue of the tendency to decouple violence against women from its embeddedness in other forms of violence and to treat various forms of violence against women as discrete, rather than interrelated, phenomena. I suggests that there are strong similarities between sexual abuse victim and

* Professor, Division of Public and Police Administration, Kyungnam University, Ph D. in Sociology.

women's experiences of violence. For example, in both cases abuse is often motivated by the desire or need to control a partner. Assault against women must be recognized to be a continuation of the more routinized sexualization women faced and existed on a continuum that was grounded in the dominant definitions of feminity that emphasize female vulnerability in opposition to masculine strength. This study argues that physical violence, soft-tissue injuries, lacerations, abrasions, and bumps were most frequently associated with sexual abuse by husband or boyfriends, compared to other possible assailants.

- ❖ Key words : violence against women, gendered violence victimization, victim-offender relationship, overlapping between general violent victimization and sexual violent victimization